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24 - 6 호

「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3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「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」 일부개정(안)

####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물류창고업으로 등록하는 내용으로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시행 '24.2.17)됨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물류시설법 개정에 따른 지침작성 기준 반영(안 별표 1)
  - 보관시설에서 주문배송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바닥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·이행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| 개정안 | 수정안 | 의견 |
|-----|-----|----|
|     |     |    |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 
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
- 전자우편 : thkim0528@korea.kr
- 팩스 : 044-201-5601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『정책자료-법령정보-입법예고·행정예고』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(044-201-401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